인쇄일자: 2024. 01. 26. 07:28:13

정보공개 청구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(대리인)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| 접수번호 11808201 | | 접수일 2024. 01. 25. | 처리기간 7일(2024. 02. 02.)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| 성명(법인·단체명 및 이양재 | 대표자 성명) | 생년월일(성별) 1943. 07. 20 (남) | | |
| 청구인 | 여권 • 외국인등록번호 | ː(외국인의 경우 작성) | 사업자(법인 • 단체)등록번호 | | |
| | 주소(소재지)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 | 구 장승배기로 145 | 전화번호(또는 휴대전화번호) 010-123-4567 | | |
| | 전자우편주소 hjhj3388@naver.com | ١ | 팩스번호 () | | |

[대통령실을 폭파라도 해야 정신을 차릴지]

제목 대통령실을 폭파라도 해야 정신을 차릴지

참조 제목 6급 상당 서정호가 실질적인 대통령이니 이송기관 무시 정도는,,(2) '신내림 받았다'는 소문은 없지요? 대통령이 잘못한 일과 했어야 할 일들(2024.1.21.)

- 1. 이 거지발 싸개 같은 새끼 들을 어떻게 하지요? 이런 놈 들이 대통령실에 있다니..
- 2. 윤석열씨! 修身齊家도 못하는데 治國(平天下)까지?
- 3. 한동훈씨에게 우송한 대단히 용기 있는 기관(전결자에게 '대단한 용기의 기안자가 소신껏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 고맙다'고 인사전합니다)이 나온 덕분에 이양재가 보내려는 계획은 포기하였습니다.

청구 내용

-역대 장관 중 2번째라고 칭찬했던 한동훈씨의 점수를 깎아야 할 일이 발생하였습니다. 좀 더두고 봐야 겠지만 김경률이라는 놈이 100% 잘못하였음에도 감싸고도는 것 같은..

4. 여전히 기안자 6급 상당 서정호는 변함이 없고, 전결자이던 역적 1호 김동조는 더 중요한 자리로 이동되었고, 후임비서관 최진웅의 종결 사유는 항상 똑같은

[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 (제11조의2제1항제1호)

귀하께서 청구하신 내용은 이미 접수되어 처리 중이거나, 처리완료된 청구내용과 내용상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종결처리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 니다.]

5. 이런 개 새끼들이 대통령실에서 월급버 러지 노릇을 하고 있으니 양오봉이 정도는 당연히,, 어쨌건 개 새끼들에게 주는 월급이라도 아끼기 위해 앵무새들로 교체하면,,끝

| 공개 방법 | [|]열람·시청 [|]사본·출력물 | + [\ | /]전자파일 [|]복제·인화물 | [|]기타 | (|) | |
|-------|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|------|-----|---|---|
| 수령 방법 | [|]직접방문 [|]우편 | [|]팩스전송 [∨ |]정보통신망 | [|]전자우 | 편 등 | (|) |

인쇄자 : 김동규 기관명: 재단법인서울장학재단 IP: 61.41.39.58 1/2

인쇄일자: 2024. 01. 26. 07:28:13

| 수수료 | []감면 대상임 | [∨]감면 대상 아님 | | | |
|-----|---|---------------|--|--|--|
| | 감면 사유 | | | | |
| | 해당없음 | | | | |
| | ※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,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 | | | | |

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.

2024 년 01 월 25 일

청구인

이양재

(서명 또는 인)

(서울장학재단이사장) 귀하

| 접 수 증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|--|--|
| 접수번호 11808201 | 청구인 성명 이양재 | | | | |
| 접수부서 재단법인서울장학재단 | 접수자 성명 김동규 | (서명 또는 인) | | | |

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.

2024 년 01 월 25 일

서울장학재단이사장

유의사항

- 1.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「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.
- 2.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법률 _|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. **행정심판** (서면 또는 온라인: www.simpan.go.kr)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3.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4.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인쇄자 : 김동규 기관명: 재단법인서울장학재단 IP: 61.41.39.58